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기본법」과 다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설정〉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16224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설정 (안 제15조제2항~제4항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6. 1. 22.
3. 회 부 일 : 2025.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과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명령·변경명령 등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설정(안 제15조제2항~제4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해야 하고(안 제2항), 이의신청기간 및 결과통지기간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이의신청) (생략)	제15조(이의신청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신 설>	<u>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선행교육을 규제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입학전형을 규제하고, 대학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위원(1명 이상 필수)으로 구성된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교육과정 운영 및 입학전형 관련 선행교육 금지 주요 규제 내용]

-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금지
 - 방과후학교 과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농산어촌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 등의 경우 예외적 허용
-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및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를 금지

-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특성화 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것 금지
 - 학교장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야영, 모듬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활동의 경우 반영 금지
 - 학교장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하고,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함.
- 대학등의 장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 금지
- 대학등의 장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함.
 - 대학등의 장은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해야 함.
 - 대학등의 장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해야 함.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

□ 현행법은 교육관련기관¹⁾이 상기 언급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정상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화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
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4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
간에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4조제3항)²⁾.

- 이에 대하여, 현행법은 교육관련기관은 시정명령·변경명령 또는 조치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의신
청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제15조)³⁾,

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장은 해당 행정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
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⁴⁾.

- 뿐만 아니라 법 시행령에서는 처분청의 통지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
고 있는바, 교육부장관등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
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경
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
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
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
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
리) 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
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 이와 같이 현행법은 시정명령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통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법령이 마련하고 있는 절차는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신청 관련 기간 비교]

구분	행정기본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이의신청	30일	14일
결과 통지(회신)	14일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30일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①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행정에

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⁶⁾,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절차]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관련기간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고, 처분청의 통지에 대해서는 위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6)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을 이의신청 절차의 중요사항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법의 위임도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포괄위임금지원칙).

□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⁷⁾,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통지 기간 등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달리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임⁸⁾.

□ 다만,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통지 기간의 경우 동 이의신청 절차등에서 중요사항으로 보이는데, 법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법체계에 맞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고려할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30일 → 14일)되어 교육관련기관의 권익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반대로 처분청의 결과통지(회신) 기간은 연장(14일 → 30일, 최대 24일 → 44일)되어, 이의신청과 결과통지 기간을 합한 전체 기간이 결과통지 연장(1차례)을 고려할 때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보다 연장(54일 → 58일)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관련기관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저해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이의신청 관련 하위법령 정비방안」(법제처, '25.8.) 참조

8) 따라서 이의신청 및 신청결과 통보 기간에 대하여 현재 「행정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교육부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86